

국가장학금 운영위원회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성결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칭한다)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국가장학금의 합리적인 운영과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 국가장학금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, 교무위원들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학생지원처장이 대리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지원과장이 담당한다.

제3조 (장학금사정관) ① 학생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장학금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장학금 사정관을 둘 수 있다.

② 장학금 사정관은 학생지원과의 장학금담당자 및 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.

③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1명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.

제4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수혜대상 기준에 따른 장학생 선발 운영방침
2. 국가장학금Ⅱ유형 장학금 수혜대상 자체선발기준 및 지급금액
3. 장학금사정관이 승인 의뢰한 사항
4. 기타 국가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

제5조 (장학금사정관의 기능) 장학금사정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생의 여건에 맞는 장학금 정보의 제공 및 상담
2.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가 발생하여 국가장학금 수혜가 필요한 학생의 (관련 증빙서류)심사 및 위원회의 승인 요청
3. 기타 국가장학금 관련 상담 결과에 따른 위원회 승인 요청

제6조 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2/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